「IBKSB 사랑愛 얼라 정기적금」 상품설명서

◈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
◈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**.

◈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▪ **상 품 명** : IBKSB 사랑愛 얼라 정기적금

▪ **상품특징** : -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만기에 원리금을 수령하는 목돈 만들기 상품
-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금융상품으로 기본금리 + 우대금리(조건 해당되는 자) 제공

2 거래 조건

☞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(2026.01.01.기준)

구 분		내 용
가입한도		• 계약고 100억원(1인 1계좌)
가입대상		• 출산예정인자(배우자 포함) • 당해 연도 출산한 부모 •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
가입방법		• 영업점 창구 가입
해지방법		• 영업점, 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(SB톡톡+, i-Bank)
가입금액		• 10,000원 이상~ 500,000원 이하
가입기간		• 6개월~36개월(월단위)
이자지급시기		• 만기일시 지급식 또는 중도해지 시 원금과 함께 지급
예금자 보호여부 [해당]		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**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1억원까지"(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** 보호됩니다. **※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예금보험공사,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**
제한 사항		• 계좌에 **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**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• 질권 설정 : 가능 (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5% 이내로 가능) • **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** 잔액 변동 불가 등
이자율	기본	• 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+ 우대금리 적용

(기준일 : 2025.09.01. 세전 / 단위 : %)

계약기간	기본금리	우대금리	비 고
6개월 이상~12개월 미만	2.50	① 출산예정인자-배우자 포함**(0.2%p)** ② 당해연도 출생한 부모**(0.3%p)** ③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**(0.3%p)** ※ 핵심예금 자동이체 신청시 **0.1%p** **→ 최대 0.5%p 우대금리 적용 가능**	세전
12개월 이상~24개월 미만	3.50		
24개월 이상~36개월 미만	3.00		
36개월 이상	2.70		

이자율	만기 후	•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

경과기간	이 율
1개월 이내	약정금리와 현행고시 금리 중 낮은 이율 적용
1개월 초과	보통예금 이율 적용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내 용</th></tr>
<tr><td>만기이자
산출근거</td><td>•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 (원미만 절사)
[입금건별 이자계산 산식] 입금금액 × 약정이율 × 일수(입금일~만기일 전일)/365
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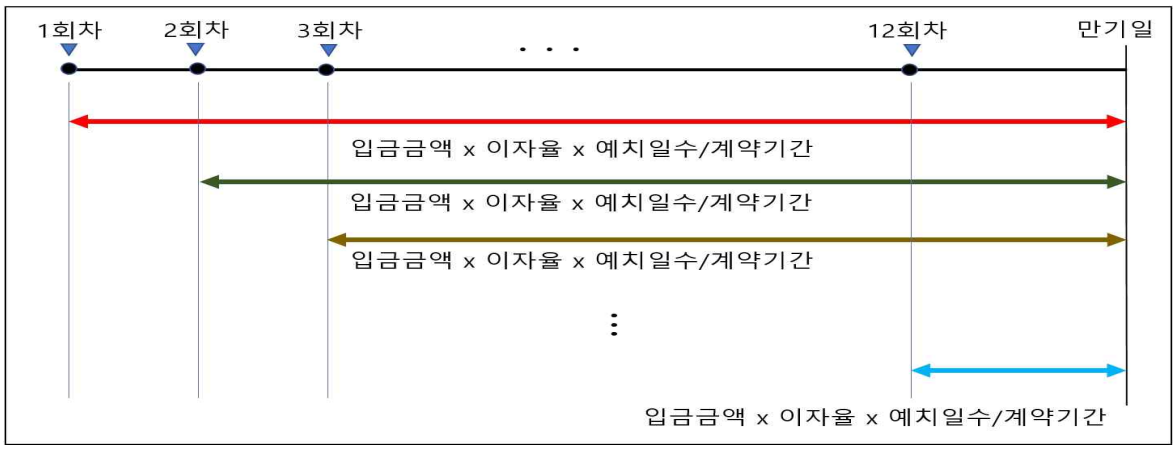
</td></tr>
<tr><td>수익률</td><td>•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(15.4%*)을 공제하여 지급
* 이자소득의 14% + 이자소득세의 10%(1.4%)를 징수</td></tr>
<tr><td>만기의
자동해지</td><td>•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(타행포함)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.</td></tr>
<tr><td>중도해지
이율
및 계산방법</td><td>• 1개월 미만 : 계약일의 보통예금 이율 범위내 적용
• 1개월 이상 : 약정이율 × 차등률 [단, 최저금리 : 약정이율 X 50%]
<table>
<tr><th>예치기간</th><th>이 율</th><th>비 고</th></tr>
<tr><td>1개월 미만</td><td>연 0.4%</td><td>보통예금 이율</td></tr>
<tr><td>1개월 이상 ~ 3개월 미만</td><td>약정이율 × 50%</td><td rowspan="5">약정이율의
50%로 최저 금리 설정</td></tr>
<tr><td>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</td><td>약정이율 × 52%</td></tr>
<tr><td>6개월 이상 ~ 12개월 미만</td><td>약정이율 × 55%</td></tr>
<tr><td>12개월 이상 ~ 24개월 미만</td><td>약정이율 × 60%</td></tr>
<tr><td>24개월 이상</td><td>약정이율 × 70%</td></tr>
</table>
• 계산방법<예시>
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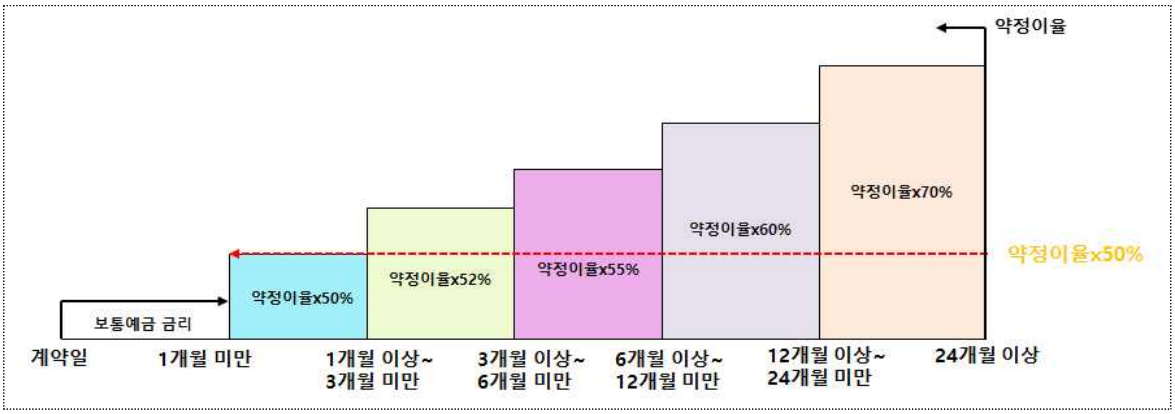

※ 가입기간이 "1개월 미만"으로 중도해지 시에는 약정이율의 50%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, 위 그림은 중도해지이율을 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임.</td></tr>
<tr><td>위법계약
해지권</td><td>•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
•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</td></tr>
</table>

구 분	내 용
계약 해지 시 불이익	• 영업점 창구에서 해지 가능, 인터넷뱅킹 해지 가능, 모바일뱅킹 해지 가능 (인터넷/모바일 가입상품 창구 해지 시 수수료 발생합니다.) •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.
선납이자 및 만기일 이연	• 선납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, 월부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지급이자에서 지연이자를 차감하고 만기일에 지급받거나, 이연일수만큼 만기일이 이연되어 늦춰집니다. ※ 이연일수 = (총지연일수 – 총선납일수) / 계약회차 ※ 지연이자 = 월부금 × (총지연일수 – 선납일수) / 365 × 입금지연이율(=약정이율+연2%)
만기 앞당김 해지	• 모든 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 앞당김 지급 가능 ※ 만기 앞당김 이자를 만기지급이자에서 공제하고 지급 ※ 만기앞당김 이자 = 만기지급액 × 앞당김이율(=약정이율+연2.0%) × 앞당김일수 / 365
만기일 경과후 부금 수납	• 만기일에 계약월수의 1/2이상 입금된 계좌에 한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.5배 기간 내에서 만기후에도 월부금 입금이 가능합니다.
자료열람 요구권	•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열람의 목적,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 •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,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. • 저축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세제혜택	• **비과세종합저축** 가입가능 • 가입대상 :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「기초연금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,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※ '20.1.1.이후 가입(자동재예치)분부터 「직전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)」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,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
분할해지	• 불가 (단, 계약의 분할은 가능)
자동재예치	• 불가
연계·제휴 서비스	해당사항없음

3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등

· **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** :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22-79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ibksb.co.kr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· **금리변동형 정기예금**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, **금리 하락기**에는 **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**할 수 있습니다.

※ ***계약체결 전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서명(날인)하시기 바랍니다.***

❶ **본 예금 상품을 계약하고,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, 가입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며, 약정이율로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?**

□ 예 / □ 아니오 ☞ "중도해지 이율 및 계산방법" 항목을 다시한번 확인해주세요

❷ **본인은 IBK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상품설명서를 제공받았으며,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예금거래의 주요내용,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**

20 . . . 고객명 : (서명/인)

◉ 금융용어 설명

용 어	내 용
압류	국가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,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됨
가압류	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
질권설정	자기 또는 제삼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,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일
경과기간	(해당 시간을) 완전히 지나간 기간 * (예시)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

※ 출처 :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, 금융감독원 알기쉬운 금융용어